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1. 2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5호로 2023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등포동공공복합시설 내 설치 예정인 「가칭 영등포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설명칭: (가칭)영등포동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66외 1필지
- 준공시기: 2024. 6. 12.(예정)
- 규 모: 면적 3156.8 m^2

※공공복합시설 중 1층 공용공간 및 3~5층에 해당

○ 위탁시설 및 사업내용

층 별	면적(m ²)	시 설	사 업 내 용
1층	338.6	로비(쉼터)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
3~4층	1843.8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교육실, 사무실,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등)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서비스제공, 시설관리 등
5층	974.4	체육관, 프로그램실, 탈의실, 샤워실 등	체육관 대관,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공공복합시설 현황

- 위 치: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66외 1필지
- 규 모: 대지면적 1,712.8m²/ 연면적 8,558.8m²
- 준공시기: 2024. 6. 12.(예정)
- 층별 주요시설 현황

층 별	면적(m ²)	용 도	비고(m ²)
합 계	8,558.8		
지상 5층	974.4	체육관	
지상 4층	895.5	종합사회복지관	
지상 3층	948.3	종합사회복지관	
지상 2층	867.0	영등포동주민센터	
지상 1층	785.3	어린이집, 로비(쉼터)	어린이집: 446.7 공용공간: 338.6
지하 1~3층	4,088.3	주차장(76대), 창고, 기계실 등	

나. 위탁개요

위탁 기간	2024. 7 .1 ~ 2029. 6. 30.(5년) <예정>
위탁사무 내용	- (가칭)영등포동종합사회복지관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다. 소요예산: 6,568백만원(시비 4,063, 구비 2,505)

○ 세부 내역

※5년간 추계

연도별	합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고
2024년	683	483	116	84	시비 70%, 구비 30%
2025년	1,407	995	238	174	시비 65%, 구비 35%
2026년	1,449	1,025	245	179	시비 60%, 구비 40%
2027년	1,492	1,056	252	184	시비 55%, 구비 45%
2028년	1,537	1,087	260	190	시비 50%, 구비 50%
합계	6,568	4,646	1,111	811	

※ 시비 보조금 보조율: 22년 80% ~ 28년 50%(매년 5%씩 하향)

4.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은 (가칭)영등포동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 운영 및 시설관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등의 자치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가칭)영등포동종합사회복지관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에 설치될 예정이며, 주민커뮤니티 공간(1층 로비), 체육관(5층)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관(3~4층)으로 구성될 예정임.
- 수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복지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위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5년의 기간(2024. 7 .1 ~ 2029. 6. 30.)으로 예정되어 있음.
- 본 위탁 사무는 소외된 계층 발굴·지원 및 구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민간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전문성 등 공정하고 종합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와 정기적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참고 자료

1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에 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위탁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